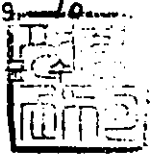


98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21
----------	----

제출년월일 : '98. 9. 10

제 출 자 : 평 창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평창군 군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98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원 안과 같이 제안 함.

2. 주요골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한 「'98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1건과 토지교환 2건등 총 3건 입니다.

토지취득은 대화면 지역에 계획중인 대화체육공원 조성부지 1건으로 6필지 12,846㎡이며, 토지교환은 도암 용산리, 유천리 경계지역의 군유지 2필지 24,599㎡를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건립부지로 선정된 영동고속도로 횡계 I.C 인근의 도유지 2필지 5,000㎡와 교환하는 것이며, 또한 군유림집단화 및 평창경찰서편입 토지 민원해결을 위하여 군유임야 1필지 88,207㎡를 사유임야 1필지 82,215㎡ 및 평창경찰서 편입 사유토지 3필지 1,845㎡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임

3. 관계법규 및 지침

- 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 나.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 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98년도 총괄표(7 - 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千.천원)

구분			합계			기 의 결			금 회 년 경		
			건	수 량	금 액	건	수 량	금 액	건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19	129,203	1,509,174	7	27,297	964,024	12	101,906	545,150
		건물	4	330	340,000	3	330	340,000			
		기타									
	1) 매입	토지	13	40,143	1,117,081	7	27,297	964,024	6	12,846	153,057
	건물	3	330	340,000	3	330	340,000				
	기타										
2) 교환취득	토지	6	89,060	392,093				6	89,060	392,093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3	112,806	557,040				3	112,806	557,040
		건물									
		기타									
	1) 매각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매각	토지	3	112,806	557,040				3	112,806	557,040	
	건물										
	기타										
철거	건물										
	기타										
대부	토지										
	건물										
	기타										

98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7 - 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표, 천원)

번호	재 산 의 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 득 재 산 소 유 자 주소성명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조 성 기 준
	지 목	소 재 지	수 량					
1- 1	전	대화대화리 405	1140	21, 204	하반 기	대화체육공원 조성	서울중앙 김창섭외	4-가-0
- 2	전	대화대화리 406	2304	42, 854	하반 기	대화체육공원 조성	대화대화 전분옥	4-가-0
- 3	전	대화대화리 407-1	942	16, 108	하반 기	대화체육공원 조성	강릉노암 전대식외	4-가-0
- 4	전	대화대화리 407-2	1160	19, 836	하반 기	대화체육공원 조성	대화대화 신광선	4-가-0
- 5	전	대화대화리 1172-1	300	13, 500	하반 기	대화체육공원 조성	대화대화 최호영	4-가-0
- 6	전	대화대화리 산 169	7000	39, 555	하반 기	대화체육공원 조성	대화대화 김승철	4-가-0
	소계		12846	153057				

98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 (7 - 3)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일단 의 면적	추정 가격	수량	교환 시기	교환 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관리계 획작성 기준	
	구분	지목	소재지								
1	처분	전	도암용산리 423-6	16072	143040	16072	하반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건립부지		다-(1) (2)	
		전	도암용산리 423-7	8527	75890	8527					
		소계		24599	218930	24599					
	취득	전	도암차항리 29-20	3766	171353	3766					강원도
		전	도암차항리 29-5	86609	56147	1234					강원도
		소계		90375	227500	5000					
2	처분	임야	봉평무이리 산204-1	88207	338110	88207	하반기	군유임야집단 화및평창경찰 서 편입토지 교환		다-(1) (2)	
		소계		88207	338110	88207					
	취득	임야	방림방림리 산 894	82215	30831	82215					이영목
		전	평창하리 220-2	463	33568	463					김형수
		전	평창하리 220-3	235	17037	235					김형수
		전	평창하리 220-5	1147	83157	1147					김형수
		소계		84060	164593	84060					
계	토지	처분	3	112806	557040	112806					
		취득	6	174435	392093	89060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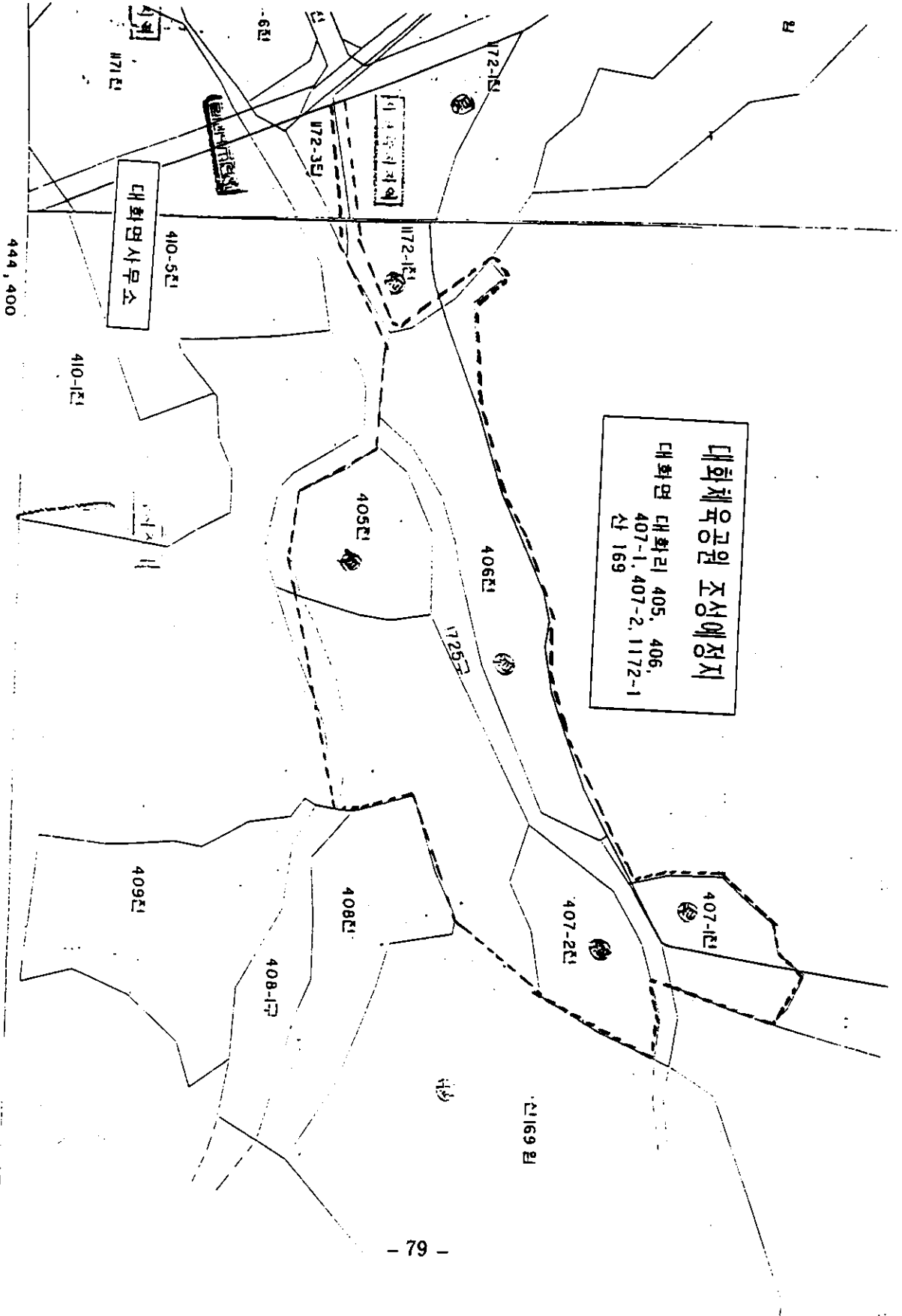
부 표

□ 위 치 도(지 적 도)

- 취 득 대 상 재 산
- 교 환 대 상 재 산

□ 관계법규 (발체)

□ '98 공유재산관리계획작성기준 (발체)



대회체육공원 조성예정지
 대회면 대회리 405, 406,
 407-1, 407-2, 1172-1
 산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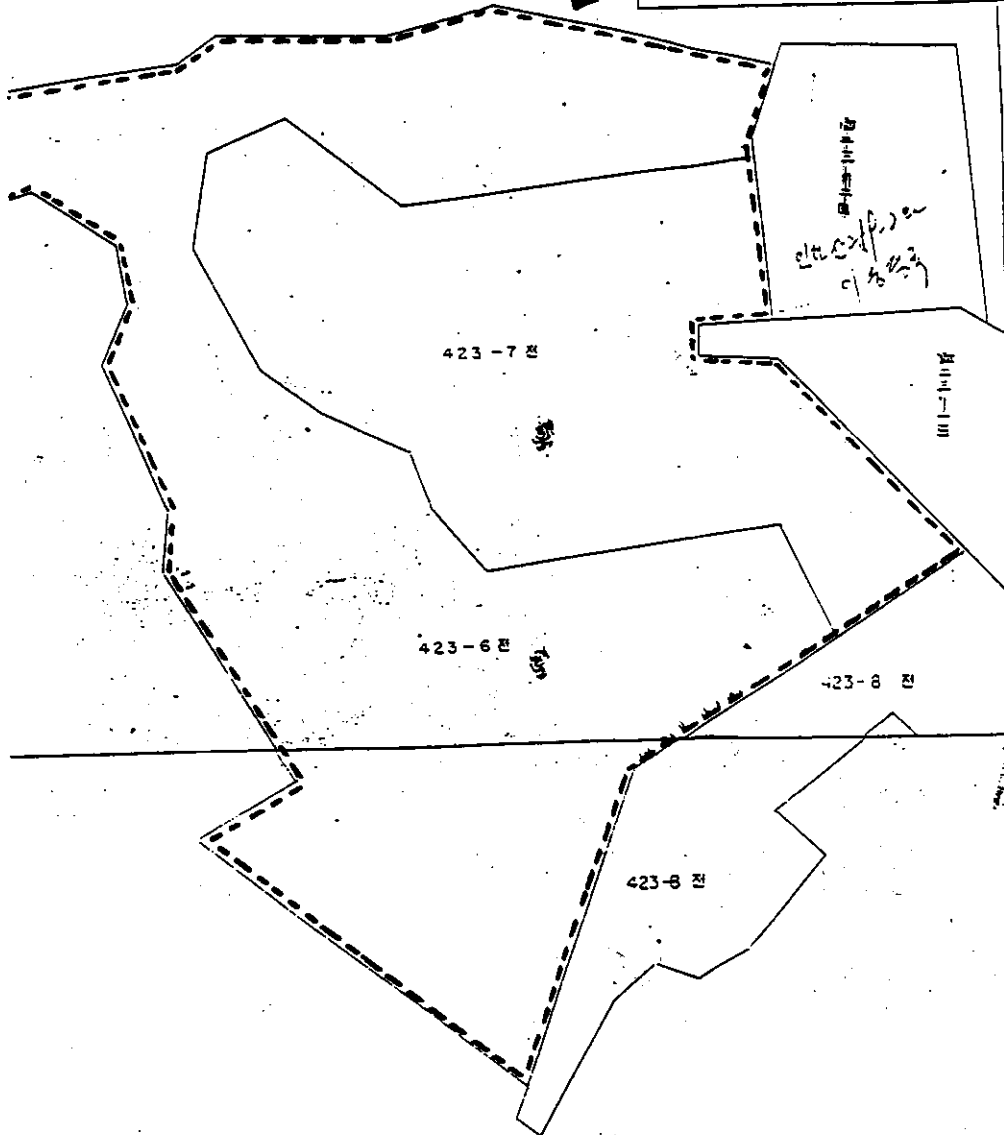
대회면사무소

444, 400

산 169 일

산 제236번지 국한선 부외!

농특산물판매장 교환부지(처분)
 (용산리와 유천3리 경계 지역)
 도합 용산리 423-6번지 16.072㎡
 용산리 423-7번지 8.527㎡



縮尺千二百分之一 (縮尺千二百分之一)
(縮尺千二百分之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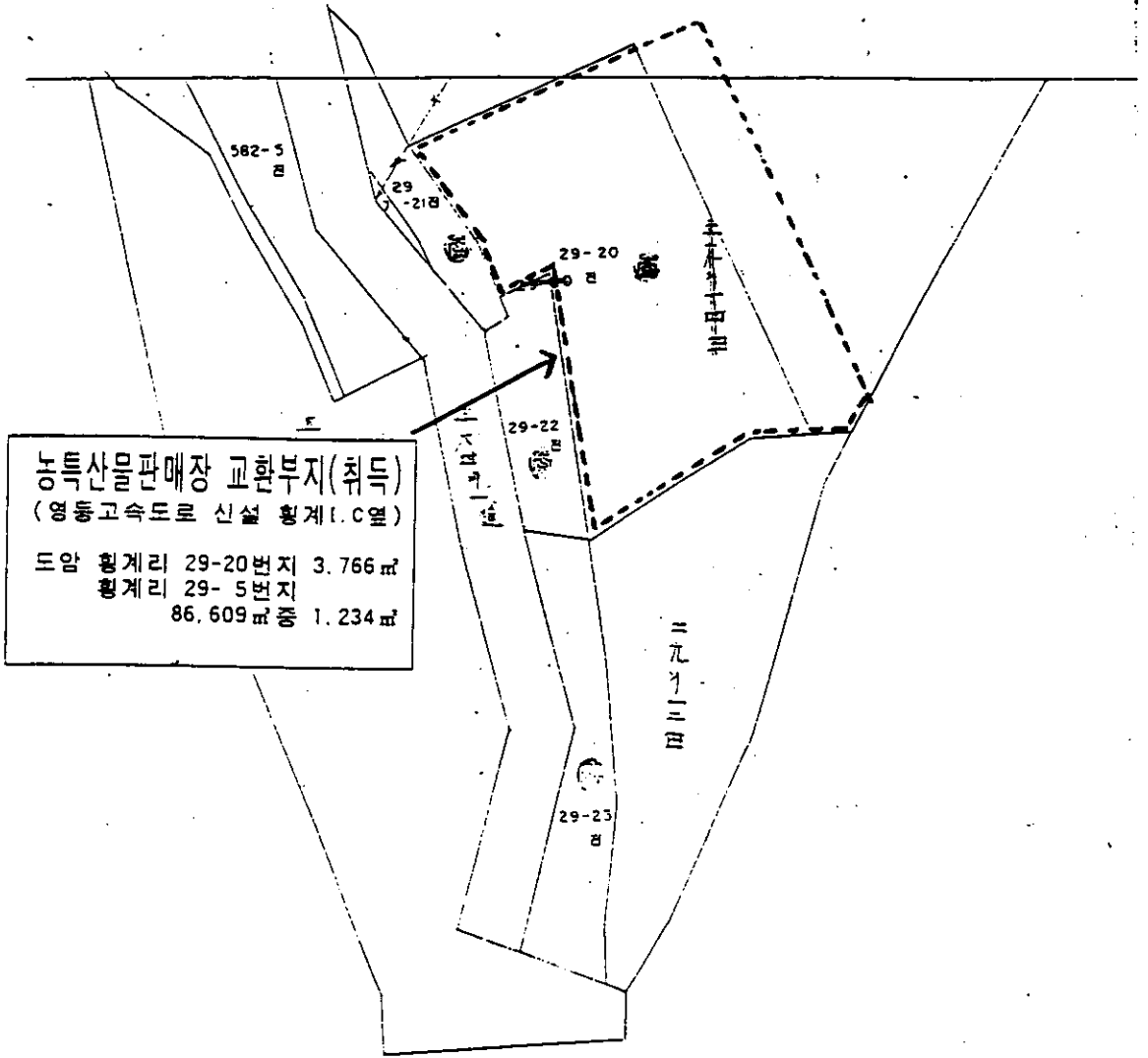
晉郡道 岩面龍山里

지적(임야)도 등본

강원도 평창군 도암읍·편지향 라29-20번지 축척 1/2000분지

-21
-22
-23

2019. 8. 29 - 19



농특산물판매장 교환부지(취득)
(영동고속도로 신설 횡계리 I.C.역)
도암 횡계리 29-20번지 3,766㎡
횡계리 29-5번지
86,609㎡중 1,234㎡

지적(임야)도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년 1998. 8. 06

평창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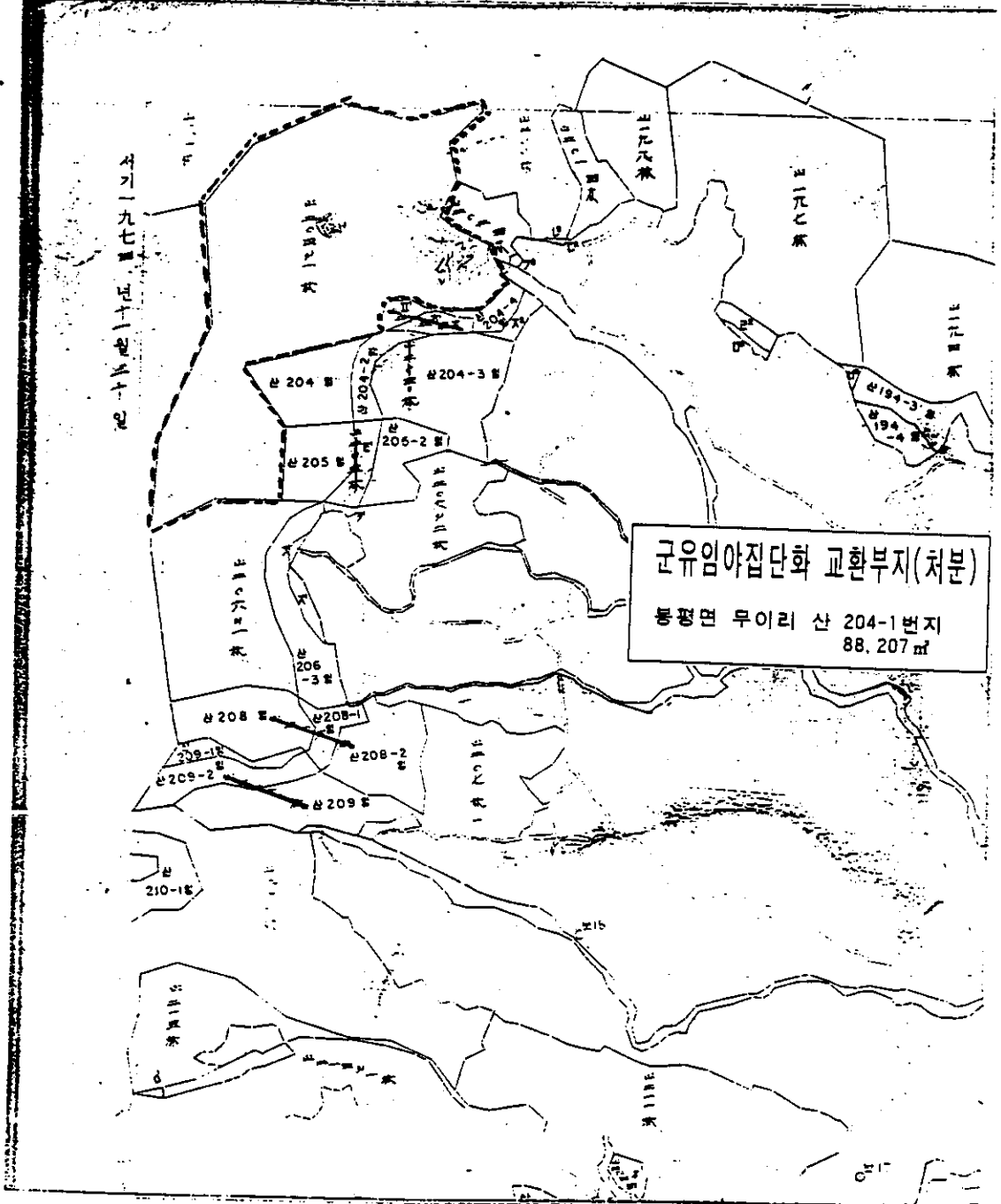


수서공무관

(이 도면등본으로는 지적축량을 할 수 없습니다)

지적(임야)도 등본

강원도 평창군 북면 읍·면·리 산지내번지 축척 6:1 분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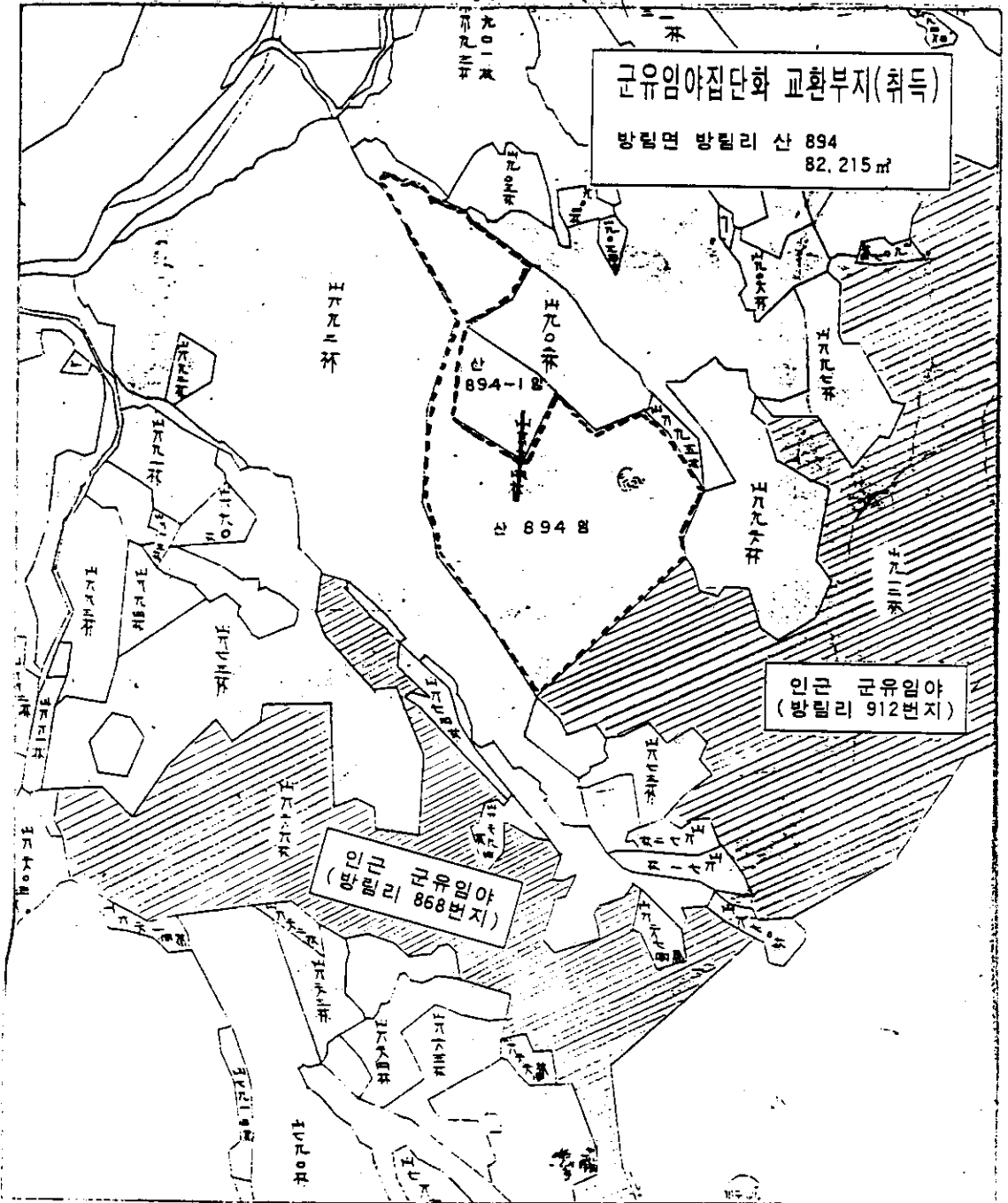


지적(임야)도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평창군 수리인 수수도부료
 년 1970 월 25 일

지적(임야)도 등본

강원도 평창군 방림읍·면 방림리 산 894 번지 축척 1:10,000 분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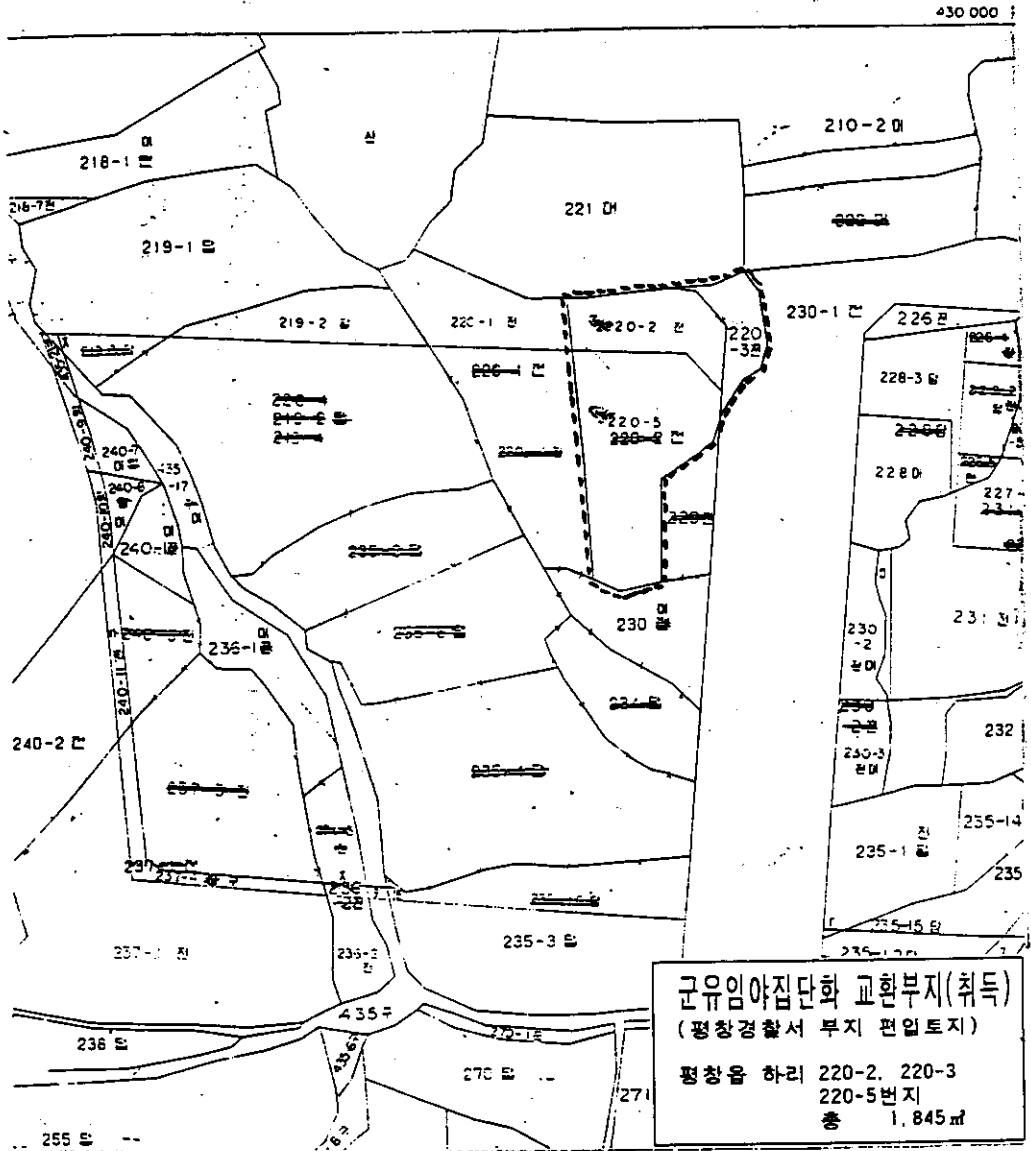
지적(임야)도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년 월 일

평창군 인수부

지적(임야)도 등본
 강원도 평창군 평상면 하리 220-2, 220-5번지 축척 1/200 분지

15장 종 제 8호 축척 1:200 분의 1



지적(임야)도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년 1998. 07 일

평창군 수인

관 계 법 규 (발 취)

〈 지방재정법 〉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으로 한다.

1.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자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 (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제101조 (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국유, 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의 가격의 4분의 3 미만인 때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의 2분의1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환의 상대방이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인 경우
2. 공유임야의 집단화를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 공유재산관리조례 〉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발췌)

4. 재산의 취득 기준

가. '97년도에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득코자하는 중요재산이 대상이 된다.

- 매입, 기부채납, 신축, 증축, 양여취득, 교환, 무상귀속 등

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토지를 우선 취득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하거나 장차 필요한 토지
- 공유재산의 집단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토지
- 새로운 개발예정지로서 공공청사 예정지
-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지
- 기존 공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5. 재산의 처분 기준

다. 재산의 교환기준

-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이 불가피한 재산을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잡종재산인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이외의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이외의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다.

(2) 전항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종류(예: 토지와 토지간, 건물과 건물간)의 재산이어야 하고, 일방의 가격이 타방의 가격의 4분의 3 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하지 못하며, 교환하는 토지의 면적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면적이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면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교환상대방이 국가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인 경우

(나) 공유임야의 집단화를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